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안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③ 해당금 청구인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금지급청구서와 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함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확인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정(②) 또는 확인(④)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은 송부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금을 송금함

⑦ 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823)

Q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임.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인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함.

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임

Q 해당금 청구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①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

- 인정신청서는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함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중중총회 결의를 그 후 추진한 경우】

甲중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함촌자 Z이 있는데도 일반 종원 丙이 중중총회를 소집하여 중중의 대표자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다른 종원들이 연고함촌자 Z에게 중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위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표자선임결의는 유효하게 되는지요?

A 중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중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임을 요하므로, 중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 한 중중규약의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카4124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중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함촌자(즉, 함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 Z이 있는데도 일반 종원인 丙이 중중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그 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그 후 소집권한이 있는 연고함촌자 Z이 소집한 중중총회에서 위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위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관례를 보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중중총회에서 이를 추진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까(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카2729 판결, 1995. 6. 16. 선고 94다카53563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대표자선임결의는 나중에 소집된 중중총회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2차 피해)

범죄사건을 계기로 또는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재차 상처 입는 과정을 제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제2차 피해자화란 요컨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그 사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또는 개인적 대응으로 인해 재차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가해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피해 이외에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화를 제2차 피해자화 및 제3차 피해자화로 분류할 수도 있다.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화를 제2차 피해자화로, 가족 친지를 비롯한 주변사람이나 지역사회 등의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 심리적 상처를 입는 과정을 제3차 피해자화로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범죄사건 처리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자화 현상을 형사사법기관 또는 그 종사자로 인한 것과 피해자의 가족 친지 기타 주변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익도 거의 없다. 따라서 제2차 피해자화와 제3차

피해자화를 구별할 필요 없이 직접적인 피해에 부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화 전체를 그 원인별로 고찰하면 충분할 것이다.

세 번째, 피해자 노출의 피해로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은 물론,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 12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에 따라 전화이나 새로운 학교생활권 적응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를 들 수 있다.

넷째로, 사건의 축소·은폐에 따른 피해로 학교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승진이나 인사평가기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학교의 태도를 들 수 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무엇 인지요?

A 현행 전기요금은 사용용도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요금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의 과다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6 단계의 누진요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구간별로 더 비싼 단가의 요금을 적용하며 특히 월 300KWh 초과 부분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어 사용량 증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냉방기기 가동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해 생각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Q 1주택수거구 적용대상과 신청절차는?

A 전기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인 1주택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 가구는 1전기사용계단 단위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의 작성 단위인 독립세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311)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세대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전기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다음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며, 전체 사용전력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의해 가구별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Q 대가족요금제 적용대상과 신청절차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한전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한전에 보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31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김중명



대사후군

대사후군이란 과도하게 살진 사람한테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 여러가지 질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만환자가 체중을 10kg 줄일 경우 총 사망률은 20%, 암 사망률은 40%나 감소하는 등 건강증진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전체적으로 10% 줄어들어 동맥경화 위험이 감소하고 공복시 혈당수치도 50%나 내려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비의존성인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약 90%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인슐린호르몬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혈당조절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비만환자와 매우 관계가

☞포천병원(031-539-9114)

깊다고 보겠습니다.

당뇨원은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요사이는 환경적 요인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개 육식위주의 음식이나 비만, 스트레스 같은 환경에 노출된다면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대사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만치료가 전제되어야 하며 비만 측정에 필요한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단위kg/m²)가 23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판정되지만 아시아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낮아도 복부 비만이 높기 때문에 비만 합병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식이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하여 비만을 예방합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부부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1주택을 증여 받은 후에 이혼한 상태에서 증여 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또한 양도인(예: 아들)이 동일 세대

원인 가족(예 : 아버지)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에 그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증여자, 수증자,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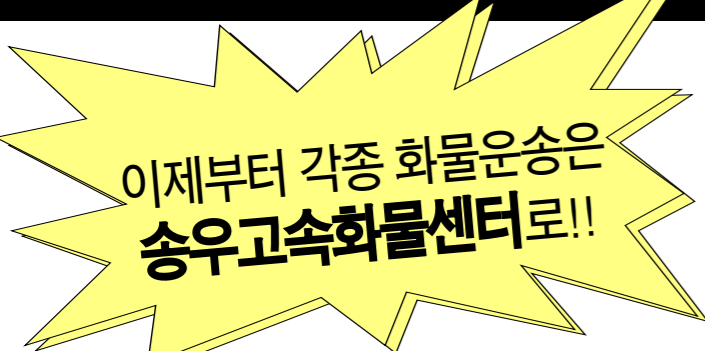
이 경우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드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고객님의 소중한 물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



화물 · 이삿짐 · 지방 · 시내 화물 운송



보유차량
1톤 · 1.4톤 · 3.5톤 · 4.5톤
등 다양한 차량 보유

송우화물이삿짐센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39-6
Tel. 031) 542-2424, 541-1234
Fax. 031) 543-7000 H.P. 018-365-3449



신속 · 정확 · 안전